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91호 2012. 7. 3(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12-12호) 2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12-13호) 6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12-1146호) 12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12호

공 고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남성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우리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도 10여개나 되어 남녀평등 이념실현에 부적합하므로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성차별적의식의 해소 및 여성능력 개발과 건강한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00분의 30이상(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여성위원을 위촉함(안제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7.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 100분의 30 이상(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되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생략)</p> <p>② 제①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⑦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다만,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되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⑦(현행과 같음)</p>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13호

공 고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확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 나.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중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제1항)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확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포항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7.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본문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 13. 정확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공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공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p>
<p>제4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p>	<p>제4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 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확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방법)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 략)</p> <p>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계공무원 5명,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p> <p>③ ~ ⑦(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u>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2-1146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 7. 2.

포 항 시 장 박 승 호

1. 공 고 기 간 : 2012. 7. 2. ~ 2012. 7. 21. (2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제재활용사업체 - 붙임 내역서 참조
3. 폐차 예정일 : 2012. 7. 23.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대구29러7595호 외 3대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권수 : 4 ◆ 공고기간 : 2012-07-02에서 2012-07-21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지장소		이해관계
				방지장소	보관장소	
2012-90	대구29러7595	NEW EF쏘나타	충남 천안시 서북구 풍천원1길 5, 303호 (성정동, 이화빌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3-3 (주)경북정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남구 건설교통과 - 추정차위반(경북12허4564, 06-1564) ● 대구 동구 세무과 - 자동차세(2001.12월) (2641) ● 교통과 - 추정차위반(2002-100580) ● 대구 북구 교통과 - 추정차위반(2002-39601) ● 대구 남구 교통과 - 추정차위반(경북12허4565, 2006-001813) ● 대구 수성구 세무과(징수팀) - 지방세 체납 18건 ● 교통과 - 책임보험 3, 경사지연 1 ■ 산업환경팀 - 배출가스정밀검사 ('08.7.17.) ● 진주시 교통행정과 - 추정차위반(2002-5389) ●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 - 과태료체납 13 ●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경기31허6280, 06-040867)외2 ● 국민건강보험대구수성지사 - 체납보험료 ('02.9.27.) ● 삼성카드 (주) - 대구지연 2002카단25438 ('02.7.18.) ■ 저당 : 삼성캐피탈(주) '01.11.12.서울 중로 태평로2가 150 ■ 저당 : 이연덕 '02.5.24. 대구 수성구 두산동
2012-100	경북31다3306 임태환	아반떼 690801-*****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68번길 20-2 (해동동)	포항시 남구 상공로 249-1 (88수측관 건너편) 도로 포항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손해배상보장범위반체납 7건 ● 포항시남구 세무과 - 지방세체납('10.8.19.) ● 건설교통과 - 추정차위반 5건 ●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추정차위반 3건
2012-103	17로6610 황철	레조2.0S LPG MT 680923-*****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20번길 46, 2107호 (온천동, 르 메이에르 동래타운)	포항시남구 청림동 1181 (정몽주로847번길 19)앞 도로 동해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추정차위반 ('08.1.10.) ●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 (부산30나6249)추정차위반과태료대과대과 ● 연제구 교통행정과 - 추정차위반과태료 4건 ● 금정구 교통행정과 - 책임보험 2, 추정차 1, 경사지연 1 ● 세무과 - 자동차세등 3 ● 동래구 교통행정과 - 추정차 5, 책임보험 2 ● 세무과 - 자동차세등 11건 ● 환경위생과 - 배출가스정밀검사('08.11.3.) ●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04.2.2.) ●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 - 신재고용보험료('03.3.7.) ● 근로복지부산동부지사, 국민건강보험부산동래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금정지사 - 보험료체납('06.7.5.) ● 국민건강보험부산연제구 거제동 '04.9.13. 설정 ■ 저당 : 박국진 부산 사상구 감전동 '05.4.8. 설정 ■ 저당 : 신재훈 부산 사상구 감전동 '05.4.8. 설정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4 ◆ 공고기간 : 2012-07-02에서 2012-07-21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 평	차 명 주민번호	주 소	방지장소		이해관계
				방지장소	모관장소	
2012-104	07N18514 홍순석	NEW EF쏘나타 LPG 740821-*****	대구 서구 원대로 41 (원대동1가)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189-2 (죽도동) 제주도 야지와한우 앞 도로	대원오토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주정차위반(2011-012927, -027498) ● 경주시 교통행정과 - 주정차위반('11.3.4, 3.30) ●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 주정차위반(2010-003892) ● 대구 북구 세무과 - 지방세체납('07.3.9.) ● 교통과 - 감사지연('08.2.29, '11.9.1.) ● 환경관리과 - 배출가스정밀검사('08.1.14.) ●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체납처분 등 177건 ● 서울보증보험 - 대구지원 2003카단53372 ('03.7.18.) ■ 지당 : 현대캐피탈(주)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23-4 '01.5.24. ■ 지당 : 고성새마을금고 대구 북 고성동3가 102-25 '02.7.3.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6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6. 28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6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진전지		신원(수지정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신원(수지정공사)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Escherichia Coli)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16	불검출	불검출	0.19	0.19	불검출	불검출	0.18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0.8	1.4	1.8	0.5	0.4	0.9	0.8	1.7	1.6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4	0.02	0.02	0.06	0.06	0.01	0.02	0.04	0.04		
건강상유해영양 무기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진(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속제 및 속독탄산염	32. 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71	0.57	0.61	0.74	0.69	0.61	0.65	0.58	0.64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60	0.031	0.051	0.055	0.054	0.024	0.041	0.018	0.029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0	0.021	0.039	0.023	0.022	0.011	0.020	0.012	0.024
35. 클로랄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		0.03mg/l이하	0.0058	0.0090	0.0086	0.0058	0.0048	0.0078	0.0076	0.0036	0.0026	
36.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Dibromoacetonitrile)		0.1mg/l이하	0.0008	불검출	불검출	0.0008	0.0010	불검출	0.0006	불검출	불검출	
37.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Dichloroacetonitrile)		0.09mg/l이하	0.0019	0.0031	0.0024	0.0020	0.0015	0.0021	0.0022	0.0012	0.0019	
38.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Trichloroacetonitrile)		0.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9. 할로아세트산(Haloacetic acids)		0.1mg/l이하	0.044	0.061	0.060	0.032	0.046	0.041	0.032	0.058	0.012	
40. 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21	0.004	0.012	0.020	0.020	0.004	0.015	0.005	0.005	
41. 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9	0.006	불검출	0.012	0.012	0.009	0.006	0.001	불검출	


구 분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원기계업부)	
			안계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진전지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산 미 양 정 수 질 검 사 결 과	42.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4	55	76	122	127	28	63	88	86	
	43.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3.1	3.2	3.4	2.8	3.0	2.4	1.4	2.1	3.8	
	44.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5.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6.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7.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8.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수소이온농도(pH)	5.8-8.5	7.0	6.8	6.8	7.1	7.0	6.2	6.4	6.7	7.3	
	50.아연(Zn)	3mg/ℓ이하	0.006	0.002	불검출	0.003	0.006	0.006	0.004	0.127	0.002	
	51.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26	10	12	35	34	12	24	15	11	
	52.총발산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79	90	127	235	233	70	144	162	153	
	53.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4.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5.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8	0.08	0.08	0.09	0.08	0.08	0.07	0.07	0.08	
56.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53	14	19	74	72	12	34	42	20		
57.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	불검출	0.02	0.03	0.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5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학야정수장은 2012년 5월 중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임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잔류염소	4.0mg/ℓ이하	0.47	0.41	0.41	0.44	0.48	0.39	0.44	0.4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2	
7.아연	3mg/ℓ이하	0.023	0.004	0.002	0.009	0.011	0.006	0.004	0.190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1	11	12	31	31	12	25	17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2

포항시 민원센터  270-8282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